

다솜이야기

지난 한 해 다솜을 향해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따뜻하고 빛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설 명절 휴무 일정 안내

2023년 설을 맞이하여 다솜데이케어센터 명절 휴무일을 안내드립니다.

21(토), 23(월), 24(화) - 낮 서비스 운영 (저녁 미제공) / 22(일) - 휴관

명절 공휴일 운영일에 따른 출석 동의 하신 어르신께서는 평일과 다른 차량 시간이 배치되오니 문자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량 시간 안내는 다음주 전송 예정입니다.

☒ 진료 시 처방전 공유 요청.

기저질환에 따른 2023년 병원 진료시 개인 처방전 사본을 센터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처방 내역 변경의 공유가 잘 협조 되지 않아 개별로 반복 연락드리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 및 기존의 처방이 변경 될 시 꼭 센터에 그 내용을 공유해주시고, 센터에서도 어르신의 투약 변경 내용을 인지하고 알맞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솜 어르신 활동 모습



종이접기 - 크리스마스 트리



신체 - 탑 쌓기

어르신들의 더 많은 활동 사진을 블로그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dasom_daycare

2023년 01월 센터 휴무일

1, 08, 15, 22, 29 일

 **다솜데이케어센터**

T. 02) 2217-7775

F. 02) 2217-7776

계좌. 국민은행 96236000171

2023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0,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자부담율에 따라 차등적용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세부기준**
 -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